

1. 개정이유

시행계획에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 및 해당 행위 등의 허용 기준을 포함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749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을 별지서식에 반영하고, 현행 별지서식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행정서식의 완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의 행정서류 감축(안 제4조제1항·제4항)

나. 별지서식 개정

1) 법률 개정사항 반영

-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허가 신청, 변경허가 신청)(안 별지 제2호서식)
-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서(변경허가서)(안 별지 제3호서식)
-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대장(안 별지 제4호서식)
-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에 대한 (착수, 변경, 완료) 신고서(안 별지 제5호의2서식)

2) 현행 미비점 개선

-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서(안 별지 제5호서식)
- 검사 공무원증(안 별지 제7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을 “(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3. 현장사진

별지 제2호서식 중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을 각각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3호 중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현장사진”으로 하며, 같은 뒤쪽 기호(○) 중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을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서(변경허가서)”를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서(변경허가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을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

가) 대장”을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서식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제목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에 대한”을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에 대한”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을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서식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된 건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 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2. (생략) 3. <u>위치도와 현장사진</u> ② ③ (생략) ④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u>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공사 또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u> 2. ~ 4. (생략) ⑤ (생략)	제4조(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u>현장사진</u>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삭제> 1. ~ 3.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허가 신청, ☐변경허가 신청)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 (변경허가) 신청사항	위치(지번)	지목
	허가(변경허가) 신청 사유 및 내용	

신청 내용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 등	구분	종류	구조	연면적	층수	용도
		종전					
		신청					
	택지의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구분	신청 면적		경사도	토질	토석 매장량
		토지 현황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구분	신청 면적		주요 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無立木地)
		수목 심기					
		수목 베기					
	토석류(土石類) 의 채취 또는 적치(積置)	구분	신청 면적		종류	부피	
		토석류의 채취					
		토석류의 적치					
	도로의 신설 및 포장 등	구분	신설		확장	포장	
		신청 면적					
	그 밖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 목적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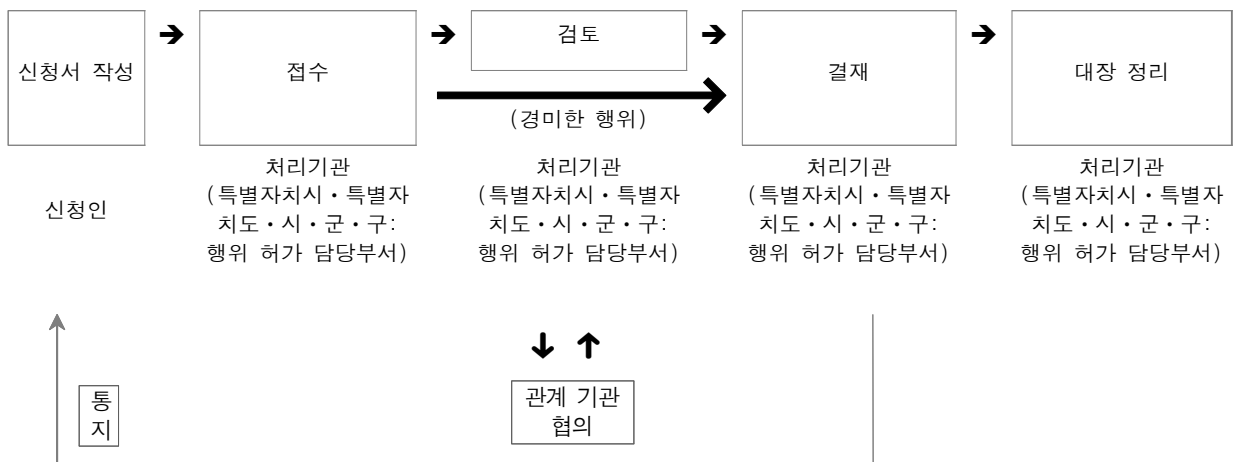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관한 계획서 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와 관련된 설계도서 (설계도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3. 현장사진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12. 3.>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서(변경허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허가번호	
허가(변경허가)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허가(변경허가) 대상	위치(지번)
허가 내용	구분 []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 등 [] 택지의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 토석류의 채취 등 [] 도로의 신설 및 포장 등 [] 그 밖의 행위()
	상세내용
	허가(변경 허가)기간
허가(변경허가) 조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를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행정사항

1. 이 허가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4. 관계 법규와 위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허가권자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대장

[illegible]297mm×210mm[백상지(80g/m²)]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 으로 표기하십시오.

※ 허가행위란에는 ①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 등 ② 택지의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③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④ 토석류의 채취 등 ⑤ 도로의 신설 및 포장 등 ⑥ 그 밖의 행위()로 구분하여 작성하십시오.

※ 상세내용란에는 허가서에 적힌 허가 상세내용을 적으십시오.

※ 기간연장란에는 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연장된 허가기간을 적으십시오.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고 사항	행위 허가 (신고)내용	[]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 등 [] 택지의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 토석류의 채취 등 [] 도로의 신설 및 포장 등 [] 그 밖의 행위()		
위치				
면적(㎡)			부피(㎥)	
근거 법령				
허가권자			허가일 년 월 일	
공사(사업) 추진 상황			※ 공사(사업)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공사(사업) 진척도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사업)의 추진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계획서 2. 공사 또는 사업과 관련된 설계도서(설계도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11 - 3. 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수수료 없음
------	--	---------------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에 대한 ([]착수 []변경 []완료)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 사항	위치 및 허가일	위치(지번)	허가일 년 월 일
	행위구분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 등 []택지의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토석류의 채취 또는 적치 []도로의 신설 및 포장 등 []그 밖의 행위()	
	상세내용	※ 허가서에 작성된 상세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	※ 허가서에 작성된 허가조건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허가 변경사항	변경내용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조건	변경 연월일 . . .	
착수 연월일 년 월 일		완료 연월일 년 월 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에 대한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앞쪽)

제	호
검사 공무원증	
사 진 3.5cm × 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영문명)	
국가유산청	

60mm × 90mm(백상지 120g/㎡)

(바탕색: 연하늘색)

(뒤쪽)

검사 공무원증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검사대상: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하가 시행하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가유산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